

2023 복지

권리

안내수첩



본 내용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차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찾아주신 분들께 ————— 04

1. 가난에 처했다면 이러한 복지를 이용합시다 ————— 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2. 당당하게 수급신청, 부당하면 이의신청! ————— 35

수급신청을 해봅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지원 정책 ————— 49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의료지원  
서울지역 각종 지원

4. 기초보장제도를 바꾼 사람들 ————— 105

기초법공동행동 활동 연혁

5. 질문과 답변 ————— 113

기초수급, 이의신청, 주거지원  
담당할 땐 상담전화





##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찾아주신 분들께

###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의 권리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난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우리 사회는 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편견의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누구나 낙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갑시다.

### 함께 고쳐나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타깝지만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 3년이 흘렀지만 낮은 보장 수준과 까다로운 선정 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빈곤층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꿔 왔습니다.

## 수급권자가 만드는 빈곤정책

복지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수급이 필요하거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의 힘으로 빈곤정책을 제대로 만듭시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함께 넓힙시다.

## 수급권자의 권리는 '알 권리'로부터

제도에 평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주눅들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에는 망설임 없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복지권리 안내수첩>은 가난한 이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자신감이 되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달팽이유니온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사)참누리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평화주민사랑방 / 참여연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홀리스행동 (34개 단체)



01

가난에 처했다면  
이러한 복지를  
이용합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sup>1</sup>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 ✨

---

1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sup>2</sup>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1.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아래 기준보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 유의하세요.

〈 2023년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구분 (가구)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1인	2,077,892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3,456,155	1,036,846	1,382,462	1,624,393	1,728,077
3인	4,434,816	1,330,445	1,773,927	2,084,364	2,217,408
4인	5,400,964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6,330,688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7,227,981	2,168,394	2,891,193	3,397,151	3,613,991
7인	8,107,515	2,432,255	3,243,006	3,810,532	4,053,758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때마다 7인 가구 기준에 7인 가구와 6인 가구 차이를 더해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text{소득인정액} = \begin{array}{|c|} \hline \text{소득평가액} \\ \hline (\text{실제 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text{근로소득공제})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hline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 \times \text{소득환산율} \\ \hline \end{array}$$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 ▷ 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등록장애인 등은 다음 페이지의 공제율 적용

- 
- 2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실시한다는 기준입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8.12.31.이전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 사회복지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유의사항

-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 재산소득, 이전소득<sup>3</sup>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자립준비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 조건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소득에서 30%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sup>4</sup> 보장

수급권자 가구에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창업한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생계급여는 취·창업 자녀를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반영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합니다.

- 3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4 보장가구 : 국가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  
별도가구 보장 : 원래 보장가구에 포함되지만 법에서 특별히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가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 2. 수급권자 재산기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고, ‘기본재산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주거용재산은 월 1.04% 환산율을 적용하나 주거용재산 적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재산(월 4.17%)으로 처리합니다.

### 기본재산액

〈 근로능력유무/주거지규모별 기본재산액 (단위 : 만 원)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근로 능력자 가구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	8,000	7,700	5,300
근로 무능력자 가구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	15,100	14,600	11,200

-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하고,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 임차보증금은 95% 이상을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 ▷ 생활준비금 : 의료,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적용)
- ▷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 원, 3년 한도 1,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가구만 해당)

## 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가 허용되고,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예외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 서술된 내용은 대략적인 기준이므로 재산기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동주민센터·구청 혹은 130쪽의 상담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부양여부나 부양의사와 관계없이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 포함).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생계급여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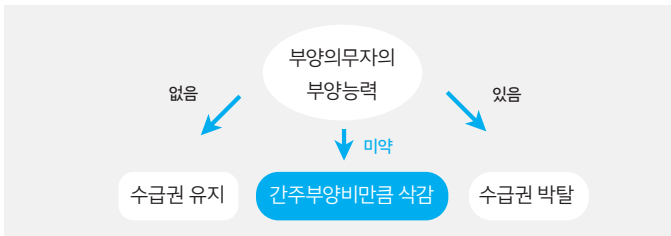
▷ 가구 요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가구 요건	완화 내용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다 판단된 경우에는 간주부양비가 부과됩니다.
- ▷ 간주부양비란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의료급여의 30% 또는 15%)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수급권 영향 〉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 수를 추가 산정합니다. 예)3인이 함께 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1명 있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구청 혹은 130쪽의 상담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2023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부양 능력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인	없음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2,077,892 ~ 2,909,049 (3,075,280)	3,456,155 ~ 4,287,312 (4,287,312)	4,434,816 ~ 5,265,973 (5,265,973)	5,400,964 ~ 6,232,121 (6,232,121)	6,330,688 ~ 7,161,845 (7,161,845)
		있음	2,909,049 (3,075,280)	4,287,312 (4,287,312)	5,265,973 (5,265,973)	6,232,121 (6,232,121)
2인	없음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2,077,892 ~ 3,460,354 (4,095,195)	3,456,155 ~ 4,838,617 (5,115,109)	4,434,816 ~ 5,817,278 (5,839,319)	5,400,964 ~ 6,783,426 (6,783,426)	6,330,688 ~ 7,713,150 (7,713,150)
		있음	3,460,354 (4,095,195)	4,838,617 (5,115,109)	5,817,278 (5,839,319)	6,783,426 (6,783,426)
3인	없음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2,077,892 ~ 3,851,818 (4,819,404)	3,456,155 ~ 5,230,081 (5,839,319)	4,434,816 ~ 6,208,742 (6,563,528)	5,400,964 ~ 7,174,890 (7,278,477)	6,330,688 ~ 8,104,614 (8,104,614)
		있음	3,851,818 (4,819,404)	5,230,081 (5,839,319)	6,208,742 (6,563,528)	7,174,890 (7,278,477)
4인	없음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2,077,892 ~ 4,238,278 (5,534,353)	3,456,155 ~ 5,616,541 (6,554,268)	4,434,816 ~ 6,595,202 (7,278,477)	5,400,964 ~ 7,561,350 (7,993,427)	6,330,688 ~ 8,491,074 (8,681,422)
		있음	4,238,278 (5,534,353)	5,616,541 (6,554,268)	6,595,202 (7,278,477)	7,561,350 (7,993,427)
5인	없음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미약	2,077,892 ~ 4,610,167 (6,222,349)	3,456,155 ~ 5,988,430 (7,242,264)	4,434,816 ~ 6,967,091 (7,966,473)	5,400,964 ~ 7,933,239 (8,681,422)	6,330,688 ~ 8,862,963 (9,369,418)
		있음	4,610,167 (6,222,349)	5,988,430 (7,242,264)	6,967,091 (7,966,473)	7,933,239 (8,681,422)

※ (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

〈 2023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 기준)(단위 : 원)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구분		1인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748,041
	대도시	일반재산 <sup>5</sup>	263,963,515
		주거용재산 <sup>6</sup>	299,927,031
	중소도시	일반재산	171,963,515
		주거용재산	207,927,031
	농어촌	일반재산	137,463,515
주거용재산		173,427,031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96,128
	대도시	일반재산	275,890,791
		주거용재산	323,781,583
	중소도시	일반재산	183,890,791
		주거용재산	231,781,583
	농어촌	일반재산	149,390,791
주거용재산		197,281,583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72,287
	대도시	일반재산	284,359,973
		주거용재산	340,719,946
	중소도시	일반재산	192,359,973
		주거용재산	248,719,946
	농어촌	일반재산	157,859,973
주거용재산		214,219,946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346,194
	대도시	일반재산	292,720,869
		주거용재산	357,441,738
	중소도시	일반재산	200,720,869
		주거용재산	265,441,738
	농어촌	일반재산	166,220,869
주거용재산		230,941,738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513,544
	대도시	일반재산	300,766,558
		주거용재산	373,533,115
	중소도시	일반재산	208,766,558
		주거용재산	281,533,115
	농어촌	일반재산	174,266,558
주거용재산		247,033,115	

5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6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2인	3인	4인	5인
996,128	1,172,287	1,346,194	1,513,544
275,890,791	284,359,973	292,720,869	300,766,558
323,781,583	340,719,946	357,441,738	373,533,115
183,890,791	192,359,973	200,720,869	208,766,558
231,781,583	248,719,946	265,441,738	281,533,115
149,390,791	157,859,973	166,220,869	174,266,558
197,281,583	214,219,946	230,941,738	247,033,115
1,244,216	1,420,375	1,594,281	1,761,632
287,818,067	296,287,249	304,648,145	312,693,834
347,636,135	364,574,498	381,296,290	397,387,667
195,818,067	204,287,249	212,648,145	220,693,834
255,636,135	272,574,498	289,296,290	305,387,667
161,318,067	169,787,249	178,148,145	186,193,834
221,136,135	238,074,498	254,796,290	270,887,667
1,420,375	1,596,534	1,770,440	1,937,791
296,287,249	304,756,431	313,117,327	321,163,015
364,574,498	381,512,862	398,234,654	414,326,031
204,287,249	212,756,431	221,117,327	229,163,015
272,574,498	289,512,862	306,234,654	322,326,031
169,787,249	178,256,431	186,617,327	194,663,015
238,074,498	255,012,862	271,734,654	287,826,031
1,594,281	1,770,440	1,944,347	2,111,697
304,648,145	313,117,327	321,478,223	329,523,912
381,296,290	398,234,654	414,956,446	431,047,823
212,648,145	221,117,327	229,478,223	237,523,912
289,296,290	306,234,654	322,956,446	339,047,823
178,148,145	186,617,327	194,978,223	203,023,912
254,796,290	271,734,654	288,456,446	304,547,823
1,761,632	1,937,791	2,111,697	2,279,048
312,693,834	321,163,015	329,523,912	337,569,600
397,387,667	414,326,031	431,047,823	447,139,200
220,693,834	229,163,015	237,523,912	245,569,600
305,387,667	322,326,031	339,047,823	355,139,200
186,193,834	194,663,015	203,023,912	211,069,600
270,887,667	287,826,031	304,547,823	320,639,2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실제 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해 지급합니다.

〈 2023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 규모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1인 가구	623,368
2인 가구	1,036,846
3인 가구	1,330,445
4인 가구	1,620,289
5인 가구	1,899,206
6인 가구	2,168,394
7인 가구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생계급여액에 1인당 263,861원을 더합니다.

## 2. 주거급여

### 임차가구

- ▷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임대료<sup>7</sup>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7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합니다.

〈 2023 임차급여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에 연이율 4%를 적용하여 임차료를 환산한 금액을 실제 월차임과 합산합니다.

☆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

예시 :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월 13.3만 원

산식 :  $(1,000만 원 \times 0.04 \div 12) + 10만 원 = 3.3만 원 + 10만 원 = 13.3만 원$

- ▷ 공공기관(LH, 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부과·고지·수납합니다.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상, 주거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임차급여로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 산정방식 ☆

예시 : 만약 80만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라면 자기부담금은?

$$(800,000 - 623,368) \times 0.3 = 52,989$$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 ▷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주기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도서지역 10% 가산)	457만원 (5,027천원)	849만원 (9,339천원)	1,241만 원 (13,651천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능·설비(창호, 난방공사, 단열 등)	구조,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수선비용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율	100%	90%	80%

※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장애인 가구에 최대 380만 원, 고령자 가구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 3.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선택진료과목 등 제외).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선별급여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부담입니다.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

		1차	2차	3차	약국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로서 산정특례 등록된 사람

-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약국의 본인부담금은 처방조제의 경우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입니다.

※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를 부담합니다.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6세 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입원) : 3%
- 고위험 임신부(입원) : 5%,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 : 5%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외래) : 10% 등(조현병은 5%)

##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 지급 제외

※ 타 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진료비,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비는 지급 제외

##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장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 제외

## 4.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내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학교급별 교육활동 지원비 〉

학교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금액(연 1회)	415,000	589,000	654,000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 포인트)<sup>8</sup>로 지급됩니다.

## 5. 해산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출산(또는 예정)일 경우 지급합니다.
- ▷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 ▷ 신청시 필요서류
  - ①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 ②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사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8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지 않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도 지급합니다.

## 6. 장제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1구당 80만 원
- ▷ 사망한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한 이에게 지급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 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 ▷ 신청시 필요서류
  - ①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 ② 장제비 영수증
  - ③ 장제급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긴급복지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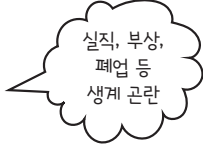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 ✨

빠른 지원이 필요한 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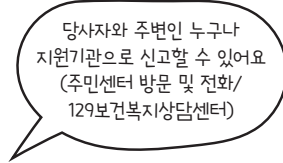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 발생



지원요청



선지원



지원의 적절성 검토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할 때, 당사자와 주변 관계인이 신청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먼저 필요한 상황을 판단해 빠른 지원을 한 뒤, 추후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해 지원이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복지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주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④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의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주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⑪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⑫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재산 참고 기준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
  - ▷ 재산<sup>9</sup> 기준
    - ①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 원 이하)
    - ②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 원 이하)
    - ③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9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긴급복지지원제도,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금액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	생계유지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623,300원 이내 (1인 기준)	6회
	의료	의료서비스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 300만 원 이내(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제공이 우선 원칙 - 국가·지자체 또는 타인 소유 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8,900원 이내 (대도시, 1~2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2,000원 이내 (1인 기준)	6회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월 110,000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해산비(1인당 70만 원) 장제비(80만 원)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 1. 생계지원

〈가구별 긴급생계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3,8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2. 의료지원

### 지원금액 및 범위

- ▷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비,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 퇴원 전 긴급지원요청을 원칙으로 함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 동일 상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지원대상

-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 만성질환(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 ※ 다만,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 ▷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선 보건소 개별 사업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다만, ①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건소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②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 가능
- ▷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3. 주거지원

〈가구별 긴급주거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 원칙적으로 임시거소의 지원을 우선으로 하며,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 임시거소를 제공해야 할 경우, 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4. 교육지원

〈가구별 긴급교육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5. 그 밖의 지원

〈기타 긴급지원내용 및 금액 (단위 : 원)〉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월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월 110,000원 지원
-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50만 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①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② 체납요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장제비 : 1인당 80만 원 지원
-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 ※ 단,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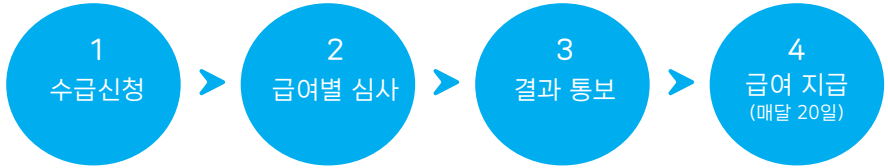
당당하게 수급신청  
부당하면 이의신청!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과정〉



## 1. 수급신청

- ▷ 수급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준비 서류
    - ① 신분증
    - ②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
    - ③ 급여를 받을 통장
    - ④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도 꼭 떼어주세요.
  
- ▷ 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③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 ▷ 구비해간 서류와 작성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 수급신청을 합니다
- ▷ 기초생활수급신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서면이 아닌 구두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및 구청 직원은 수급신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 2. 급여별 심사

- ▷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고려해 각 급여별 담당 부처에서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 ▷ 30일 안으로 처리 후 통보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 3. 결과 통보

- ▷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통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급여 실시

- ▷ 수급에 선정되면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급여신청일)로 부터의 급여를 소급해 지급합니다.
- ▷ 심사 중 긴급복지를 이용했다면 긴급복지 지원 액수를 제해 지급됩니다.
- ▷ 통장에 들어온 급여와 20~26쪽에 있는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비교·확인해 봅시다.
- ▷ 기초생활보장 수급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란?

수급권자의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 외 입금이 제한되므로 일반 통장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방법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60606-1234567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실거주지 주소) 서울시 ○○구 ○○동 11번지					휴대전화	010-1234-5678
							전자우편	abcdef@gmail.com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부인	김○○	601111-11234567	동거	-	고혈압	없음	없음	02-123-1234
1.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2. 외국어권 소지자명: _____ 3. 국외출생자명: _____ 4. 복수국적자명: _____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홍길동의 아들	홍○○	876543-1234567	경기 부천시 ○○구 ○○동	2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본인	홍길동	00은행	123456-78-90123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보장구분		사회보장 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거급여( [ ]자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차 [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주민번호: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 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서비스	전체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 작성 시 감면서비스(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 고객센터: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사업자명:                      고객센터: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가족사항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p>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능력여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
--	-----

<p>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p> <p><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p>	[ ]
--	-----

선택적 동의	동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의사항	동의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귀하

## 작성법

### 1면

- ▷ 신청인 :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가족사항 : 가족을 적고 동거 여부를 적습니다.
- ▷ 부양의무자 : 나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합니다.
- ▷ 급여계좌: 실제 급여를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 ▷ 통지방법 : 연락받기 편한 방법에 √ 표시합니다. (모두 체크가능)

### 2~3면

- ▷ 2면 맨 윗칸 : 필요한 급여에 모두 √ 표시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모든 급여 신청 시 필요합니다.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모두 해당)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의료급여 신청 시에만 필요합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신청 시 불필요)
  - 수급가구의 세대주 및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로부터 직접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발송합니다.**
-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1.1) [앞면]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	홍길동	340101-1234567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등 보호자의 친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또는 무인,인감)
아들	홍반장	580000-1234567	(서명 또는 인)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확인조사 지원 일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2021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방법 (필요시)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
- 소득이 없다면 모두 0원으로 작성합니다.
- 한달 평균을 어렵해 작성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홍길동				
소득 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     )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정기지원	원	원	원	원
사적이전소득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명 (     )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원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원	
	금융재산		원			
	동산	<input type="checkbox"/> 소 (     마리,     원)	분양권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 (     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 (     마리,     원)	회원권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 (     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원		
	개인간 부채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할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2020년 01월 01일 신청인(대리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소명서 작성방법 (필요시)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소명서입니다.
- 공통 지정 양식이 없으며 ‘소명서’나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등 주민센터마다 서류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명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이름, 주소지, 가족 관계가 해체된 상황을 적으면 됩니다.

※ 최근에 가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일 년에 한두 차례 왕래하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실제 부양받지 않고 있다면 가족관계 해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각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의 부양 단절을 인정하고,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명서	
1. 제목	부양의무자 관계 해체 소명
2. 당사자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종로구 홍길동 1017번지
3. 의견	<p>저는 현재 아는 동생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렸지만 다친 이후 일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이혼한 후 집을 나와 연락이 끊긴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기 어렵습니다.</p>
4. 기타	
<p>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3년 07월 19일</p> <p>의견 제출인</p> <p>주소 : 서울시 종로구 홍길동 1017번지 (전화 : 02-706-1233)</p> <p>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종로 1~4가 동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상세히 쓰면  
 됩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에 탈락하거나 급여가 중지·삭감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제38조)

## 생계·의료·주거급여



- ① 수급신청 또는 급여변경, 중지를 통보받거나 알게 된 지 9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 ③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의신청자에게 미리 현장조사 일정과 장소를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 ④ 30일 이내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유에 따라 처리기한은 15, 30, 60일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연장시한도 45일, 60일, 90일)
  - 서면 통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통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90일 안에 다시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
- ⑥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하여 변동 내역을 실시합니다.

### 교육급여



〈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019.4.1 개정) 〉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60606-1234567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11번지		전화번호	02-123-4567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처분 내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2023년 07월 19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p align="center">급여가 중지된 시점, 삭감된 금액 등을 씁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20px;"> <p>1) 급여가 중단·삭감될 정당한 근거가 없음 2) 급여가 중단·삭감될 경우 곤란한 상황 등을 씁니다.</p> </div>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제16조, 「기초연금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 「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18조, 「장애인복지지원법」제38조, 「아동수당법」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align="center">2023년 07월 19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 align="center">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p>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사·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03

## 각종지원정책

공공임대주택

의료지원

서울지역 기타 지원제도



# 공공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 공공임대주택 구분

건설형 : 단지를 새롭게 지어 공급

매입형 : 기존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활용

임차형 : 민간임대주택 활용

##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준

- ▷ **무주택자** (세대주·세대구성원 모두 해당)
  - ▷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세대주
    -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만19세 이상**. 단, 아래 상황에는 미성년이 신청 가능
    - ①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
-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및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아래 표)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 유형별로 가구 월평균 소득의 몇 %인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외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구 등이 기준이 됩니다.

〈 2023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4,020,246
60%	2,012,330	3,003,226	4,030,919	4,573,234	4,824,295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규정 시 1,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일부 완화, 1인가구는20%p, 2인 가구는10p 상향 적용합니다.

- ▷ 청약저축 가입 여부(신청 시 무관) / 청약저축 적립 개월 수가 중요합니다.
- ▷ 신청창구가 어디인지(동주민센터/인터넷 등),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순위 및 배점표를 확인하세요.
- ▷ 보증금 지불 능력 및 월 임대료 지불 능력 / 보증금 지불 능력 안 될 경우(대출, 기타 지원제도) 계약기간 내 적정 보증금 투입 계획도 필요합니다.
- ▷ 이사 일정 확인(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금 납부 이후 2개월 동안 잔금 지불 기간을 가질 수 있음) / 이사 시 비용과 인력의 유무 / 이사 후 연체 시 상담창구 연계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	영구 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	국민 임대	장기 전세	행복 주택	10년 공공 임대		5년 공공 임대
임대 사업자	LH공사, SH공사					LH공사, SH공사 등		
임대 기간	50년(30년/10년)		30년	20년	6년/20년	10년		5년
주택 규모	49㎡ 이하	60㎡ 이하				85㎡ 이하	149㎡ 이하	85㎡ 이하
입주 자격	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철거민, 청약저축, 도시근로자 70%	도시근로자 70%	도시근로자 100%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임대 조건	시세 30%	시세 90%	시세 55~80%	시세 80%	시세 60~80%	시세 90%	시세 이내	시세 90%
매각 여부	불가					10년 후 분양		5년 후 분양

## 1. 영구임대주택 공고기간 내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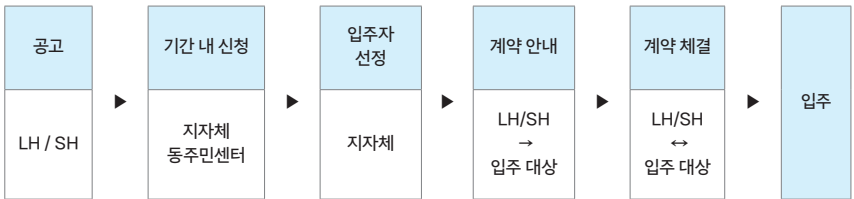
공급대상	세부자격	자산기준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li> <li>-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li> <li>-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li> <li>- 일군위안부 피해자</li> <li>-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복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가구</li> <li>-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포함)을 부양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구성원 총 자산이 2억 1500만 원 이하 입주 및 재계약 가능(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포함. 단 자동차는 개별 가격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함)</li> <li>※ 영구, 매입, 전세 모두 적용 (해마다 기준 변경 확인)</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li> <li>-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 이하</li> </ul>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자 민주유공자 및 가족 등(공급 물량의 10%)</li> <li>② 신혼부부(공급 물량의 10%)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li> <li>③ 귀한 국군 포로(시도지사 결정)</li> </ul>	한시적 적용	



## 지원내용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9㎡ 이하 (가구원수별로 신청 가능한 크기가 달라짐)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체결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수준

## 신청방법



## 입주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거주 가능

##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 60% 허용

전환율 : LH 6%, SH 6.7%

(단위 : 원)

구분(예시)	수급가구		수급가구 외 가구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강북 40㎡	3,573,000	71,160	10,225,000	115,150
방화 33㎡	2,775,000	55,270	13,071,000	148,110

## 감안할 점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1989년과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택으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한 편입니다. 신청 이후 입주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편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 ▷ 신청한 단지별, 전용 면적별로 경쟁하여 선정되며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대기자를 선정합니다.
- ▷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정에 따라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합니다.

※ 종합점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거복지센터 상담전화를 통해서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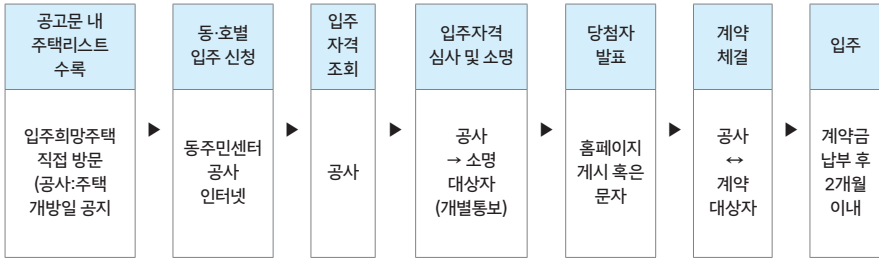
## 2. 기존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기간 내 신청

LH 및 SH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최장 20년 까지 거주(계약횟수 10회, 계약기간 2년 최장 2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대상	임대조건
일반주택 매입임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 가구</li> <li>- 보호대상 한부모가족</li> <li>- 주거급여수급 또는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미달(입식 부엌, 화장실미비)혹은 RIR30% 이상인 자</li> <li>- 65세 이상 기초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고령자</li> <li>- 장애인등록증교부자 중 도시근로자가구소득 70%이하</li> </ul> </li> <li>○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li> <li>-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li> <li>○ 임대보증금 : m당 89,620원(전국평균 약 450만 원)</li> <li>○ 월 임대료 :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금액 (약 10~20만 원)</li> <li>※ 고령자유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65세 이상이면서, 1-2순위 고령자 공급물량에 지원한 사람</li> <li>- 임대기간 : 평생 거주가능</li> </ul> </li> </ul>
19-39세 청년 매입임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li> <li>○ 2순위 : 본인과 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li> <li>○ 3순위 :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 최장 6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li> <li>- 월 임대료 : 시세의 30~50%</li> <li>- 보증금 : 100~200만 원</li> </ul>
신혼부부 매입임대 I, II	<p>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또는 혼인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li> </ul> </li> <li>○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li> </ul> </li> <li>○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li> </ul> </li> </ul> <p>※ 혼인기간과 자녀연령 완화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봐야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매입임대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li> <li>- 임대기간: 최장 20년</li> <li>- 임대조건: 시세의 50% 이하</li> </ul> </li> <li>○ 신혼부부 매입임대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li> <li>- 임대기간 : 최장 6년(유자녀 시 최장 10년)</li> <li>- 임대조건 : 시세의 80%이하</li> </ul> </li> <li>※ 신혼 매입 2유형 4순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혼인가구</li> <li>- 기준 : 월평균 소득 120% 이하+자산 완화 (맞벌이 경우 140% 이하)</li> </ul> </li> </ul>
공동 생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li> <li>○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li> <li>○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li> <li>○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횟수제한 없음)</li> <li>○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 무료 원칙</li> <li>- 자체 운영기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징수 가능</li> </ul>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60%(2인 가구), 50% 이하(3인 이상 모두)인 자로 거주지 관할 시장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통보한 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li> <li>○ 쪽방, 고시원, 여인숙, 피사방, 반지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보증금 : 50만 원(매입, 전세임대 동일 /SH의 경우 100만 원)</li> <li>- 월 임대료 :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한 월세환산액</li> </ul> </li> <li>○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 일반전세임대 동일 (* SH는 전세임대주택 공급하지 않으며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하고 있음)</li> </ul>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중 시장, 구청장이 LH공사/SH공사에 통보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li> <li>○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 금액</li> </ul> </li> </ul>

## 신청방법



※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유형별로 신청장소, 방법이 다르니 공고문을 잘 읽어보세요.

## 임대료

정부가 매입한 가격에 의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보증금은 시중 전세가격의 30~35% 수준입니다.

구분	LH	SH
보증금	평균 400만 원	평균 1000만 원~2000만 원
	지하층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는 지상층 임대보증금의 2/3 수준으로 결정	
월 임대료	100,000원~350,000원	

※ SH공사는 '서울시사회복지기금' 대출을 연계 최대 1천만 원의 보증금을 확보 (무이자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사용상 제한이 있습니다.

## 감안할 점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으로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물량이 매우 부족하며 대도시의 경우 보증금 수준이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일반전세임대 공고기간 내 신청 / 신혼부부·청년 수시 신청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반전세(보증부월세),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건에 부합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 〈 입주유형 및 신청자격 (기존주택 일반전세/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구분	기존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목적	도심의 최저소득계층 생활권 내의 주거안정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 아동 청소년 주거안정
임대사업자	LH공사/SH공사(지방공사)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주택규모	85㎡ 이하 (1인 거주 시 60㎡ 이하)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 /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미달 혹은 RIR30% 이상인 자 / 소득 70% 이하 장애인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li> <li>○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인척위탁가정</li> <li>○ 소년소녀가장</li> <li>○ 대리양육가정</li> <li>○ 교통사고유자녀가구</li> <li>○ 아동복지시설퇴소자</li> </ul> <p>※ 소년소녀가장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전세금의 연2% 임대료의 절반까지 할인됨.</p>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1순위는 2%)	만 20세까지 무상
월임대료	기금의 연2% / 통상 10~18만 원	

〈 입주유형 및 신청자격 (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

구분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목적	신혼부부, 아동포함 가구 주거안정	청년 주거비 부담 해소
임대사업자	LH공사/SH공사(지방공사)	LH공사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2년 단위 3회 재계약 (최장 6년)
주택규모	85㎡ 이하 (1인 거주 시 60㎡ 이하)	60㎡ 이하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며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하여 미성년 (만18세 이하)</li> <li>- 유자녀신혼부부</li> <li>- 예비신혼부부</li> <li>- 유자녀 한부모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소재지 외 타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li> <li>○ 1순위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li> <li>○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생</li> <li>○ 3순위 : 1,2순위 비해당 대학생과 취업준생</li> </ul>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100~200만 원 수준
월 임대료	기금의 연2% / 통상 10~18만 원	8~20만 원 수준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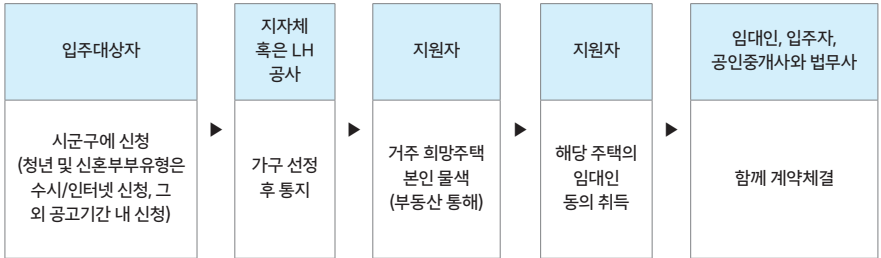
(단위 : 만 원)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일반 및 고령자 전세임대	1억 3천	9천	6천
소년소녀 전세임대(아동 2명 이상 2천 증가)	1억 3천	9천	6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억 3천	9천	6천
신혼부부(1)	1억 4천 5백	1억 1천	9천 5백
다자녀	1억 4천 5백	2억	8천 5백
청년 전세임대	1억 2천	9천 5백	8천 5백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계약 가능. 단, 해당 지원한도액 250% 이내로 제한 (가구원 수 5인 이상 예외 인정 / 아동 3인 이상일 경우 추가지원금 있음.)

- ※ 보증부월세 계약가능 (단, 임대료 3개월분 본인부담 보증금 포함)
- ※ 주택이외 주거용오피스텔 계약 가능함
- ※ 입주시 도배장판 시공 지원 (10년 단위 1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화재보험 지원

## 신청방법



## 감안할 점

전세임대주택은 계약 가능한 주택을 찾기 쉽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낮추고 거주 지역을 유지해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고령자가구, 장애인가구 등의 이용이 많습니다.



## 4.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 매입임대/전세임대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복지시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에게 보증금이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LH가 공급해 왔습니다. 2016년 SH는 매입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SH는 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주택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 반지하·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만화방·피시방·컨테이너·옴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방수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침수우려 지하거주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선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 주거급여조사기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70% 이하, 2인 60% 이하, 3인 이상 가구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타 자산(토지, 금융, 자동차 포함)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지원내용

대상자 유형, 입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원)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전세임대 지원 한도	13,000	9,000	7,000
매입임대 책정 임대료	LH매입임대주택 50만 원, SH매입임대주택 300만 원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은 LH만 공급함.

※ 국토부의 비주택이주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이사비, 가구·집기 일부 지원함.(주거복지센터 문의)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에서 확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감안할 점

최근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수요가 급증한 것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습니다. 타 임대 주택 유형에 비해 신청서식이 복잡하며 입주자선정위 등 유명무실한 절차가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5.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SH와(지방공사) LH의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SH와 LH에 통보한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긴급복지지원법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하는 이유)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선정기준

다음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할 때

-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②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 ③ 각 지자체 조례
- } 29쪽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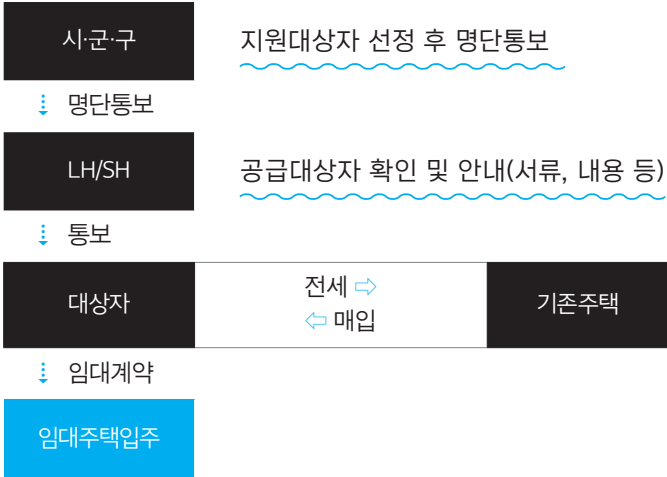
### 지원내용

(단위 : 원)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전세임대 지원 한도	13,000	9,000	7,000
매입임대 책정 임대료	LH매입임대주택 50만 원, SH매입임대주택 300만 원		

※ 앞의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므로 입주 시 보증금 필요함.

## 신청방법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본인부담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입주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감안할 점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이거나 종료된 이후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으나, 먼저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하고 있어 본인 부담 보증금이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 6. 재개발임대주택 (SH) 공고기간 내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형 임대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철거민 특별공급	
1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순위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4순위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공가발생 일반공급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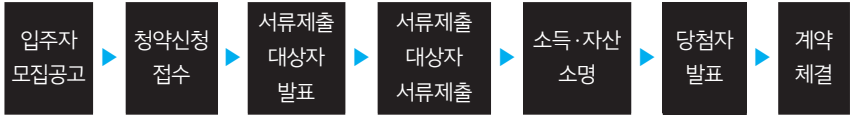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신규 건설시 입주한 경우에는 50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신규건설 이후 공가가 발생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소득기준 초과 시까지 지속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건설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역 및 건축년도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50년 공공임대주택과 유사 (임대보증금은 700~2,500만 원, 월 임대료는 85,000~265,000원 수준)

### 신청절차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감안할 점

재개발지역 내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이나 입주보증금이 이주보상비에 비해 비싸다는 점, 관리비가 취약계층에 과부담된다는 점, 공급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 7. 5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기간 내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합니다.

### 입주자격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 공급(전용 60㎡ 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일정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50년 공공임대 60㎡ 이하, 10년 공공임대 85㎡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건설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역 및 건축년도에 따라 다름(시중 90%까지 적용)

## 신청절차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감안할 점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92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차상위계층과 철거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신청대상 폭은 확대되었으나 공급량이 적은 것이 현재 한계입니다.

## 8. 국민임대주택 공고기간 내 신청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공사, SH공사가 건설 및 공급합니다.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
- 총자산(토지 및 건물)이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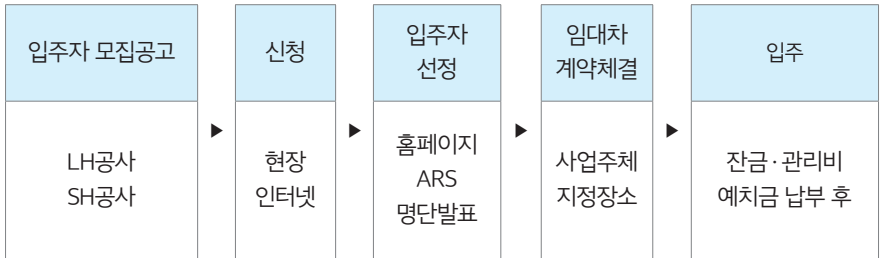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 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세대 구성원</li> <li>○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70%, 100% 이하인 자(저소득 우선 배정)</li> <li>○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 이하만 신청 가능</li> </ul> </li> <li>○ 중증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li> <li>-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li> <li>-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li> </ul> </li> <li>* 동일 순위 내 경쟁 : 미성년자녀(태아포함) 2명 이상인자, 당해 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li> </ul>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li> <li>○ 60㎡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근로자가구 100% 신청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li> <li>○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li> <li>○ 3순위 : 1, 2 순위 이외의 자</li> <li>* 동일순위 내 경쟁 :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 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li> </ul>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기간 7년 이내</li> <li>○ 혼인 기간에 임신 중/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로 국민임대 입주자격 해당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li> <li>○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li> </ul>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지구 철거민 등(공급물량의 10%)</li> <li>② 장애인 등(공급물량의 20%): 소득 50% 이하(50㎡ 이하 만) → 장애등급 → 배점순서로 공급</li> <li>③ 3자녀 이상(공급물량의 10%)</li> <li>④ 국가유공자 등(공급물량의 10%)</li> <li>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공급물량의 3%)</li> <li>⑥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공급물량의 2%)</li> <li>⑦ 신혼부부(공급물량의 30%): 소득 50% 이하(50㎡ 이하만) → 청약순위 →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자녀수</li> </ul>	
<p>※ 참고 : 상기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에 대한 배점 기준</p> <p>세대주나이(3점), 부양가족수(3점), 거주기간(3점), 노부모부양(3점), 미성년자수(3점), 청약저축회수(3점), 중소기업졸업자(3점), 사회취약계층(3점), 건설공제부금적립(3점)</p>			



## 지원내용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 3천만 원~5천만 원선, 임대료 20~30만 원선

## 신청절차



## 9. 행복주택 공고기간 내 신청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특징

- 임대기간 및 면적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 그 외 대상별 상이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60~80% 수준(평균보증금 : 7,900만 원, 임대료 : 30만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청년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8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제외)

### 신청자격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청년 : 만19~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이거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개정 및 확대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 무주택기간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 자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 총 자산	총 7,200만 원 이하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총 25,400만 원 이하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총 29,2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신청 또는 공사 직접방문 신청/인터넷 청약 접수

### 감안할 점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가 시세의 60%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 비교적 협소한 규모로 부담가능성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1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제도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통합,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예외 : 세대원 중 60세 이상 (배우자의)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

### 지원내용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 1억 원	1억 원 초과
소득 2천만 원 이하	1.8%	1.9%	2.0%
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2.0%	2.1%	2.2%
소득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6천만 원)	2.2%	2.3%	2.4%

-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임차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은 1%p 우대하고, 다자녀 0.7%p(2자녀 0.5%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에 0.2%p를 우대하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1%p 우대와 다자녀 등의 우대는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가능

※ 신혼부부·청년용 버팀목 대출은 별도입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의 대출금액이 결정되므로 우선 상담을 요합니다.

## 11.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가구 증가를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은행권을 통해 진행하므로 금융채무연체자(신용불량)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및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차액 60만 원 이하(고시원 대출 불가)

### 지원내용

- 대출한도: 매월 40만원 이내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금리: 우대형 연 1.0% / 일반형 1.5%
- 신청시기: 월세임대계약 사실이 증빙 될 경우 가능
- 상환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신청방법

신청대상자가 임차주택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

※ 지자체 : 확인서류만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 비수급자 등

## 1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상시모집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① 현재 근로 중인 청년
- ②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정보검색 및 인터넷 접수 (<http://housing.seoul.go.kr>)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

### 1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의 연 최대 4% 이하 이자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
0~2 천만 원 이하	3.0%
2~4 천만 원 이하	2.0%
4~6 천만 원 이하	1.5%
6~8 천만 원 이하	1.2%
8~9.7 천만 원 이하	0.9%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의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 또는 다산콜센터(☎120)



## 14.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특정)

월세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특정바우처와 일반바우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li> <li>○ 한부모,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서울형 수급자 등 주거급여 미수급 가구의 경우 신청 가능</li> <li>○ 다음은 신청 불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용대차(무상임차), 전대차, 공공임대주택, 민간전세거주자, 쪽방 거주자</li> </ul>
특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과 쪽방에서 퇴소한 이후 민간임대주택(보증부월세)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안정지원을 위해 한시적 지급</li> <li>※ 쪽방상담소, 사회복지시설 확인을 거쳐 신청, 제도의 한계가 있음</li> </ul>

### 선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만 해당)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이하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가구
- 일반주택 및 옥탑, 지하방 지원 가능(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 제외)
-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 지원내용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일반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가구원수별 지급 임대인 계좌 입금 원칙				
특정	120,000 (1~2인)		150,000 (3인 이상)		
	지원기간 1년(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매달 25일 지급) 생애 1회 지급 원칙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
-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고시원입실증 등 필요), 등본, 원초본 구비(단, 금전채권 압류자의 경우 대리수령 가능하며 대리수령신청서,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압류 관련 서류 제출 요함)

## 15.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수시신청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반지하거처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전세계약일 경우도 지원 가능(단, 2022년 8월 9일 이전 이주한 가구 및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일반바우처 중복지원불가, 특정바우처 중복지급가능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지원)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가구
- ※ 다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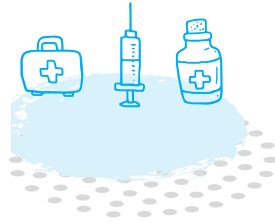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가구〉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원)	3,353,000	5,005,000	6,718,000	7,622,000	8,040,000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연중 수시 신청
- 준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구비 후 신청

#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 대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 지원내용

#### ①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② 요양급여용 본인부담 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3·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3·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50·40·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3인실의 경우는 각 40·30%를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소득/재산기준

- 가구원수,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회 입원(외래의 경우 지원대상 질환별로 최종 진료일부터 1년 전까지 합산)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 지원상한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해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로,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신청방법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입원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3일(토, 공휴일 제외), 7일(토, 공휴일 포함) 이전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자
  - ※ 대상질환은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안내 (총 1,165개)
- ②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 ③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 일부 지원 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65개 희귀질환, 24개 지원질환(법고시에 따름)	지정된 대상 질환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 질환	
요양급여	요양급여비	-	○	-	○	-
중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보조기구 구입비	-	-	○	-	-
본인 부담금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지원범위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 질환 :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 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 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대상질환(1,165개 희귀질환, 24개 지원질환(법·고시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 입원료

###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65개 희귀질환, 24개 지원질환(법·고시에 따름)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 신장병 요양비	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 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③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질분: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만 19세 이상(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

### ■ 소아암 환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재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소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 성인암 환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
-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2년: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속 최대 3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연속 최대 3년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국립암센터 (☎1588-8110)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 2차 의료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직접조제	1,500원	전액
			그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만성질환자 외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2,494,000	4,148,000	5,322,000	6,482,000	7,597,000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지역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 괄호( )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단, 1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가 적용되지 않아, 20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 확대 적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7.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신체수발(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제

##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수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335,569	299,947
5인	9,497,000	346,067	402,840	359,887

※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돌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자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서비스 비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서 차등 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9.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쌍둥이는 모두 둘째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1.0kg 미만	1.0~1.5kg 미만	1.5~2.0kg 미만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자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가능 (쌍둥이는 모두 둘째아로 인정)

###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 원 상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 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 원
100만 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할 보건소

# 주요 민간단체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 <http://heart.or.kr> / ☎ 02-414-5321

- 취약계층 심장병 강좌 및 무료 진료
- 만 18세 이하 선천성 심장병 및 장기이식을 포함한 질병의 수술비 지원
- 만 19세~70세 심장병 수술 및 시술, 장기이식 수술비 지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http://childfund.or.kr> / ☎ 1588-1940

- 빈곤가정 아동 학습비,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http://kord.or.kr> / ☎ 02-714-5522/8338

- 희귀난치성질환 각종 검사, 입원 및 수술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아름다운재단

♥ <http://beautifulfund.org> / ☎ 02-766-1004

- 저소득 이혼등이(미숙아)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의 육아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500만 원 내외 지원
-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200만 원 이내 최대 4품목 지원
- 장애아동 친환경 DIY 보조기기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https://chest.or.kr> / ☎ 02-6262-3000

- 저소득가구 기초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재단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처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지원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 기타 지원제도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건에 맞지 않아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재산이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인 가구 (일반재산 +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경우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선정제외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소득평가액에 따라 최대~최소 사이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최대	소득평가액	0	0	0	0	0
	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최소	소득평가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과 동일)
-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과 동일)

### 신청방법

- 연중 상시 신청
- 본인, 친족 및 주변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문의 다산콜센터(☎120) 또는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

##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각 지자체(구청별) 조례로 정하는 추가 위기사유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지원 항목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동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120

**3.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다른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지원기관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 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3인까지 최대 300만 원 지원



항목	내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가구당 100만 원	항목 간 중복 지양 (의료비 포함 타 항목 중복 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 원 한도 인정)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 원씩 3인 300만 원까지 가능)	인당 100만 원 / 가구당 300만 원	

※ 지원 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문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서울시복지재단 ☎ 02-6353-0354



04

# 기초보장제도를 바꿔온 사람들

기초법공동행동 활동 연혁



1997

### IMF 외환위기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사회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빈곤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장.



2001

### 첫 사람, 최옥란

뇌병변 중증장애 여성이자 노점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던 최옥란은 기초보장제도에 문제제기를 한 첫 당사자였다. 그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연료비만으로 16만 원, 병원비로 약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했지만 당시 수급비는 26만 원에 불과했다. 최옥란은 국무총리에게 수급비를 반납하고 명동성당 앞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저임금, 고용불안, 빈곤확대 속에 빈곤의 사회적 해결과 권리로서의 복지를 내세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제정의 바탕은 광범위한 노동·사회·시민 세력의 사회적 연대.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 보장. 가난할지라도 물러설 수 없는 인권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는 연대의 약속. 진일보한 공공부조제로서, 수급자를 권리의 주체로 명명하기 시작.

2005

## 기초법 개정 국회 앞 천막농성

기초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라는 5대 요구를 걸고 국회 앞 천막농성.

“이번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안은 빈곤층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초법의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 기초생활 권리찾기 행동 발족

수급당사자를 조직하고 실태조사, 거리상담, 권리수첩 배포 활동을 전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8월 광화문역 지하도 무기한 농성 돌입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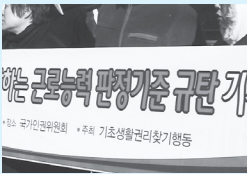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장애아들이 수급에 탈락하자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

이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요구하며 조계사 앞에서 한달간 농성 진행.



2012



근로능력평가 도입 문제 고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활동능력 평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결정.



참여연대, 최저생계비 한 달 살기 진행.  
국회의원 등 최저생계비 하루 체험으로  
많은 관심 촉발.



기초법공동행동, 최저생계비 계속년을  
맞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낮은  
급여의 문제점을 수급자의 삶을 통해  
드러냄.

2013



## 기초법 개악 저지·장애인 연금

### 공약 이행 능성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거나 더 복잡하게 만드는 개악안이었음. 통과 반대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농성 진행.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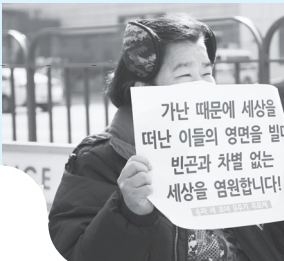
##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기초법공동행동, 맞춤형 개별급여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상담전화로 개설하고 제도 효과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2014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죄송하다'는 유서와 70만 원을 남겼다.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불린 기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세 모녀는 개정안으로도 복지제도에 진입할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평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그대로였기 때문.







“부양의무제도 폐지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대선 공약화, 대선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폐지 약속 후 1842일의 광화문 농성 마무리.

5년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임을 전 사회에 알렸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달성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5년간의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모든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 2017년 9월 5일 광화문농성장 해소의 글 중

2017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후 무리하게 일자리에 참여하다가 사망에 이른故최인기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시작. 2019년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받아내며 승소.





2019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들의 기지개**

**: 부기우기 청와대 농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계적 완화 계획만 반복하며 시간을 지체. 명백한 공약 파기임을 선언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수급권자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 진행**

**현재**



05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 / 이의신청 / 주거지원  
답답할 땐 상담전화



## 질문과 대답으로 확인하는 권리찾기

### 기초생활보장

Q. 저는 장애도 없고, 나이도 65세가 안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데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요?

A. 소득·재산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제9조)하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생계·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근로능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는 만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중증장애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그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 등)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아픈 사람이 생계·의료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자활사업 참가에 대한 조건부과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그중 의학적 평가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사본’으로 이뤄지는데,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를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활동능력 평가를 합니다. 시·군·구는

판정 결과를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의학적 평가 결과에 따라 2~5년이 될 수도 있음)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다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읍·면·동에서 알림). 물론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재판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Q.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어떻게 떼나요? 주의할 게 있을까요?

A. 몸이 아픈 분들은 여러 개의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순서대로 진단서를 떼 내는 게 좋습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1~4단계로 판정되는데, 2종류의 질병으로 진단서를 낼 경우, 높은 단계의 질병보다 1단계 높게 평가하게 돼 있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질병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어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대상 질환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질환은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아니라면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어도, 다른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있었던 경우나 질병이 고착되어 치료를 해도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진단서뿐 아니라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간 진료내역이 없다면, 의사처방기록지(투약 내역이 있는 경우), 입원·퇴원기록지(수술이나 입원경험자), 영상자료(절단, 척추고정술 등 시행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질환·알코올 문제 등으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읍·면·동 담당 직원과 동행하여 진단서 발급을 지원하는 동행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주변에서 저보고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천적이거나 오래전에 장애를 가진 경우, 특정 유형의 장애일 경우 본인 스스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인들의 관찰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평가나 소득인정액 산정 등 제도 운영에 장애 정도나 장애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장애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각 장애유형에 따른 판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유형별로 장애진단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애 정도 판정에 앞서 이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 절단장애와 같이 고착이 명백한 장애는 기간의 정함이 없지만, 뇌전증 장애의 경우 2년 이상 지속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시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뇌전증장애의 경우 일정 기간에 어떤 종류의 발작이 몇 회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 및 주변인의 관찰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도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주변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진료를 거치면서, 지능검사를 통한 지능지수·사회적 기능·임상적 상태를 종합해 판정합니다. 망상이나 환청·우울 등의 증상으로 정신장애를 판정받고자 할 때는 1년 이상의 꾸준한 진료와 투약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장애들도 유형별 진단 시기·판정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으니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을 참고해 해당 기준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Q. 동주민센터에서 제 명의의 자동차가 확인되었다며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명의를 도용당해 대포차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경우 대포차를 수급(권)자의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고 ①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②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③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④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대포차로 인해 수급이 중지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수급(권)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공부상 명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628).”고 판단한 판례에 따른다면, 수급(권)자가 실제 보유한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청은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포차가 확인되어 수급에 탈락하거나 급여 중지·삭감되신 분들은 본인 명의 차량이 대포차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수급에 탈락했어요. 자녀와 관계가 소원하고 실제 어떠한 부양도 받고 있지 않는데 수급자가 될 수 없다니 막막합니다.

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를 판단할 때에는 단편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실제 수급(권)자를 부양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가족관계가 어떠한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 하나만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가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구고등법원 2010누2549 판결)”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급히 돈이 필요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개인에게 빌린 돈은 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다시 갚아주어야 할 돈인데 전부 재산으로 보아 수급자가 될 수 없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포함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 간 사채는 판결문(지급명령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와 같이 법원 확인이 없는 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채로 인정을 받아야만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 오라니 난감하실 텐데요. 관련법령과 지침에서는 개인 간 사채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므로 개인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이체내역 등 자료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1인 가구로 수급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2인 가구 수급신청을 하라고 안내받았어요. 하지만 같이 동거만 할 뿐 배우자는 아닌데 꼭 2인 가구로 신청해야 하나요? 동거인은 소득이 있어 2인 가구로 신청하면 수급을 탈락할 것 같아요.

A. 동거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 가구원을 추가하여 다시 수급 신청을 하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동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님에도 보장 가구원 추가를 요구받거나 급여 탈락·중지·삭감 처분을 받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일반

Q. 각기 다른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해 모두 당첨됐어요.

둘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유형(예 :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Q. 임대주택에 있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나와야 하나요? 저는 조건부 수급으로 들어왔는데 소득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A. 기초수급가구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후 수급 탈피 등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여 무조건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즉시 퇴거조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 할증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입주자격별로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소득 증가는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후 임대료가 80%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Q.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들 2명이 있는데 최근 두 아들이 모두 취직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계약 관련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국민임대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 내에서 초과한다면 최초 갱신계약 시 임대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10% 초과 30% 이하 초과 시에는 10% 할증, 30% 초과 50% 이하 초과 시에는 20% 할증, 50% 초과 시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무려 40%가 할증됩니다. 두 아들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 할증을 부담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보시고, 부담이 되신다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청년인 경우, 월평균소득에 따라 청년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주택청약을 미납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미납한 걸 내도 인정이 되나요?

A. 청약통장 납입금을 중단했을 경우, 미납금을 청약통장에 일시 입금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은 100% 인정이 되지만 회차는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특히 회차가 점수화되어 순위 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성실납부를 한 사람들이 배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청약은 회차별 납입인정일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해당 공식을 통해서 미납 시 주택청약 납입회수를 알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회수>입니다.

Q. 임대주택을 신청하려 했더니 이혼 안 한 배우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입주 년 전 가족과 헤어져 지내고 있고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도 인정되어 기초수급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서 될 하는지도 모르는 배우자 때문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속상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헤어졌으나 법적 정리를 마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혼뿐만 아니라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정리 전까지는 같은 가구원으로 보아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조회까지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배우자 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혼절차를 마친 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사실상 가구상태를 인정해주고 한쪽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이혼 사실을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Q. SH전세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종전까지 말로는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더니, 집주인 아들이 들어온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당장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A. 현행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만, 우선 임대인과 최대한 지속거주를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 이주할 기간을 최대한 확보한 이후 해당 내용을 우선 공사(\*전세임대부)에 알려주세요. 그럼 임대인과 공사에 해당 주택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할 겁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해 각각에 보내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게 본인부담보증금 등에 대한 것이니 관련한 우편물을 보내올 겁니다. 보내오는 서류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입니다. 이 확약서는 공사와 입주자(당사자)의 본인부담보증금을 각각 어떻게 언제까지 줄 것인지, 임대인이 적는 겁니다. 본인부담보증금은 최대한 본인이 직접 돌려받으면 이후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하는데 용이합니다. 주택물색 기간을 고려해 이주할 기간을 우선 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주택 퇴거 시까지 주택을 구하지 못해서 일반 보증부 월세집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시게 되면, 퇴거일 전에 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함께 일시 퇴거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공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지속 거주 하겠다는 등의)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계약갱신 청구는 서면(내용증명과 같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잘 모르시겠으면 주거복지센터로 문의 주세요.

Q. 현재 3인 가구로 보증금 9,000만 원의 LH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달라고 하여 임대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어 너무 부담이 큼니다. LH전세임대주택 9,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주거급여로 받고 있는데 3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사 임대료(기금이자) 외에 임대인에게 별도 임대료를 내고 계시는군요. 별도로 계약하셨다면 이 부분은 이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LH전세임대주택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아 주거급여 인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LH에 연락해 전세임대주택 계약변경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해당 임차료가 주거급여 지급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 임대료 3개월분, 즉 90만 원이 본인부담보증금에 포함되니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즉 보증금 9,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실제 임차인(입주민)이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는 공사에 기금으로 내는 30만 원과 임대인에게 별도로 30만 원, 총 60만 원이 됩니다. 2021년 기준 3인 가구의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은 41만 4천 원이므로 주거급여수급가구라면 별도 비용을 더 지불하셔야 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재개발

Q. 조합에서 입주신청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가지고 온 종이에 임대주택과 보상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서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하나의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12일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신청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서 임대아파트의 입주 대상자를 “정비구역의 지정물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그럼에도 일부 재개발조합에서는, 사업비를 덜 쓰기 위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Q. 조합에서 이달 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A. 정확한 일자 는 구청 주택과 내 재개발담당자 번호를 확인해 물어보세요. 불이익은 명도소송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비용부담을 비롯해 강제집행까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주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주거세입자 등에 대해 빠른 이주를 촉구하고 있으나 빠르게 이주할 방법이 없는 주거세입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재개발지역에 세 들어 삽니다. 다들 이사하고 우리 주택은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조합에서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A. 단전은 불법입니다. 만약 단전단수조치를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거주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또 고시원에 산다고 보상비도 이사비도  
줄 수 없거나 반만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 수급가구 혹은 거처의 형태에 무관하게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1670-0121), 빈곤사회연대(02-778-4017)에  
문의, 도움을 받으록 하십시오.

## 임대차보호법 관련

Q. 임대차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앞으로 자녀 내외가 살기로 했다면서 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에서 4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었다기에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개정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예외적으로 몇몇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거나 임대인 측이 잠깐 살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즉 2년이 지나기 전에 제2자에게 임대했을 때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첫째,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  
둘째, 그러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다면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측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예컨대 들어오기로 했던 자녀 내외가 사망하거나, 급히 해외이주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A. 임대료 상한제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실에서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일은 많지 않으므로, 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에 문제될 것입니다. 여기서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5%를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료를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됩니다. 계약이 내용이 달라지는 최초의 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의 종료 시점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차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규정의 해석상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제도나 판례들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만큼 임대료에 대한 특약을 작성할 때는 전문가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신중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정의 여의치 않아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2년을 더 거주해야겠다고 갱신요구를 했더니 임대인은 처음 약정과 다르다며 갱신을 거절합니다. 저는 꼼짝없이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나요?

A. 개정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지켜서 갱신의사를 표시했다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만일 임차인의 사정으로 1년 만에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는 적법하게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이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중개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원만히 새 입주자를 구해주고 이사를 나가는 것이 맞겠네요. 당연히 나갈 때까지도 월세도 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계약갱신을 하면서 1년 후에 이사해야 할 계획이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보장되는 2년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 재건축, 매매 등으로 인한 퇴거

Q.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된다며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전세도 많이 올라서 이사 갈 집 찾기도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계약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내라면 계약서상 만기일까지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만기 전 이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비지원-청년주거급여

- Q. 학업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주소 분리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미만 대학생입니다. 분리세대로 봐서 세대주가 되는 것인지 일시적 분리세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A. 만 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40%(7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세대주로 인정은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일 경우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가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전달체계(시·군·구, 읍·면·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답답할때 상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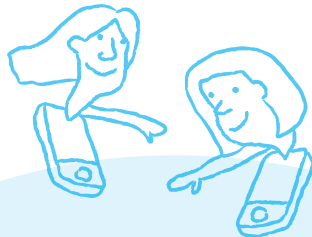
## 주제별 상담전화 \*국번없이

	기관	전화번호	상담내용
복지상담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종합민원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임대주택
금융상담 (파산/면책)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1833-6008	파산, 면책, 금융상담
홀리스 복지 상담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파산, 면책, 금융상담
	홀리스행동	02-2634-4331	홀리스복지, 홀리스 인권상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02-777-5217	홀리스복지상담
	브리지종합지원센터	02-363-9199	홀리스복지상담
	영등포보현의집	02-2069-1600	홀리스복지상담
	서울역쪽방상담소	02-3789-5119	홀리스복지상담
	돈의동쪽방상담소	02-747-9073	홀리스복지상담
	영등포쪽방상담소	02-2068-4353	홀리스복지상담
	대구쪽방상담소	053-356-3494	홀리스복지상담
	부산등구쪽방상담소	051-462-2017	홀리스복지상담
인권상담	인천쪽방상담소	032-772-6630	홀리스복지상담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	홀리스복지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인권상담
	국민권익위원회	110*	공익신고(부패행위 등)
청소년·자살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인권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성희롱, 성폭력
	생명의전화	1588-9191	위기/자살/도박 상담
장애인 차별·복지 상담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자살예방/상담
	청소년상담전화 헬프콜	1388*	청소년고민, 가출, 구조요청 등
노동·법률 상담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1670-5529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복지/인권/차별 상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02-738-0420	탈시설/자립, 장애인복지
노동·법률 상담	고용노동부	1350*	고용보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민주노총	1577-2260	노동상담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노동상담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1670-0121	법률상담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주거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주거안정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 가구상황별 상담과 주거지원서비스, 긴급주거비지원을 비롯해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례관리를 수행합니다.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강남주거복지센터	02-3453-2270	강남구 광령로 295 사이룩스 서관 309호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507호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강북구 삼양로 333, 2층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성코아상가 B23호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7-3196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금천주거복지센터	02-855-4522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311-2호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도봉주거복지센터	02-6958-8081	도봉구 도봉로 152길 26, 렉시온프라자 204호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2138-1901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호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주공1단지 상가 202호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업2차아파트 208호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91-3733	서대문구 거목골로 4-18, 1층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	서초구 청계산로9길 1-3, 서초선포레 1층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204호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환승주차빌딩 705호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 501호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302호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506B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교회관 511호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중랑주거복지센터	02-3421-8961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102호



# NH 주거급여 사업소 연락처

	주거급여 사업소		관할구역	전화번호
	소속	지역		
서울	남부권지사	남부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02-2182-2751/2757
	서부권지사	서부권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02-2169-8835
	중부권지사	중부권1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02-964-4211
		중부권2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762-3160
		중부권3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02-3392-2672
	의정부권지사	의정부권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031-822-4055
	남양주권지사	남양주권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구리시, 하남시	031-590-6637
인천	인천남동권지사	인천남동권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032-717-5271
	인천북서권지사	인천북서권	부평구, 계양구, 동구, 중구	032-717-8579
	부천권지사	부천권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032-712-5216
	김포권지사	김포권	인천 서구, 김포시, 강화군	031-8048-5411
	고양권지사	고양권	고양시	031-927-3061
	파주권지사	파주권	파주시	031-934-5643
경기	성남권지사	성남권	성남시, 광주시	031-723-9861
	용인권지사	용인권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031-280-4773
	화성권지사	화성권	화성시	031-831-2420
	평택안성권지사	평택안성권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031-668-9041/9042
	수원권지사	수원권	수원시	031-323-9149
	안양권지사	안양권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031-467-5734
안산권		안산시	031-411-7140	
부산 울산	부산동부권지사	부산동부권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051-460-6931
	부산서부권지사	부산서부권	사상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	051-796-6032
		부산중부권	진구, 동구, 서구, 남구, 중구, 영도구	051-796-6054
	울산권지사	울산권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916-1201/1202
강원	주거복지사업부	춘천권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033-258-4141
	원주권지사	원주권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033-737-7723
	강릉권지사	강릉권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033-610-5174
삼척권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주거급여 사업소		관할구역	전화번호
	소속	지역		
충북	주거복지사업2부	청주권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901-4604
	충북동북부권지사	충북동부권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043-820-9195
대전 충남	주거복지사업2부	대전권	동구, 중구, 서구, 금산군	042-470-0268/0265
	대전북부권지사	대전북부권	대덕구, 유성구,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	042-380-3441/3442
	천안권지사	천안권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041-538-5828
	충남북부권지사	충남서남부권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보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041-854-8311 /8312
전북	주거복지 사업2부	전주권	전주시,진 안군, 장수군, 무주군 부안군	063-230-6295
		정읍면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임실군, 고창군, 순창군	063-230-6339
	익산권지사	익산권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063-840-0956
광주 전남	광주광산권지사	광주광산권	서구, 광산구, 함평군, 영광군	062-441-2912
	광주북부권지사	광주북부권	북구,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062-410-1963
	광주동남권지사	광주동남권	동구, 남구, 나주시, 화순군	070-4171-4042
	목포권지사	목포권	목포시,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061-983-3377
	순천권지사	순천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061-900-4352
대구 경북	주거복지사업2부	대구권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053-603-2775
	대구북부권지사	대구북부권	북구, 서구, 중구, 남구, 군위군, 칠곡군	053-210-8362
	대구동부권지사	대구동부권	동구,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960-3651
	경북동부권지사	경북동부권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054-280-4731
	경북서부권지사	경북서부권	구미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054-450-3884
경남	주거복지사업1부	경남중부권	창원시(마산, 진해 포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055-210-8635
	경남서부권지사	경남서부권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함천군, 함양군	055-922-1551
	양산권지사	경남동부권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070-7450-9175
제주	주거복지사업부	제주권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064-720-1093

